

April 21, 2014

공동수급협정 어진 공사원가분담금 요구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

1. 사실 관계

X 건설사는 Y 4개 건설사(이하 Y 등이라고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처 A와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X와 Y 등 공동수급체는 회사별로 공구를 나누어 시공하되 공동수급협정에서 사전에 공동수급체가 협의하여 정한 실행예산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다만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토취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수급체들의 현장소장으로 구성된 기술분과위원회의 적정성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공사비 증가분을 실행예산에 반영하기로 약정하였다. X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취장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여 기술분과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이후부터는 감리단의 승인만을 거쳐 토취장을 변경하였다. 이 경우 X는 Y 등을 상대로 공사원가 분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

2. 해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면서 미리 실행예산을 협의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기로 하고 이후 실행예산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각 구성원들이 담당 공사에서 실제 투입한 비용이 당초 예상과 달리 늘어나더라도 그 증가분의 분담을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두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분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사안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토취장 변경에 따라 운반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행예산에 반영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다만 기술분과위원회의 적정성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공동원가 분담금채권의 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원가분담금 정산과 관련하여 기술분과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한 것은 감리원의 승인 하에 토취장을 변경하여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그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분담금 정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분담금의 유무와 액수를 조사·결정하기 위한 절차일 뿐, 그 자체가 공동원가 분담금채권의 발생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면서, '기술분과위원회 등에서 불승인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공사비가 증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하여 갖는 공동원가 분담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실제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X가 사전에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Y 등을 상대로 정당한 공동원가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X, Y 등은 당초 예정된 토취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 건설 현장에서 토취장 변경으로 증가하는 운반비용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적절한 분담을 인정함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나아가 위 판결이 공동수급체 사이에서의 공사원가 증액 및 분담 문제를 다룬 것이기는 하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공사대금 증액을 위하여 약정한 절차의 법적 성격을 해석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4.17자 건설경제신문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윤 변호사

TEL. 02 316 4205

E-Mail. jyyun@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